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건설교통국)

의안번호	제196호
제 출 자	이용진 의원 외 13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선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7.4.)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명)

나.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10조~제13조, 안 제15조)

다.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중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내용 신설(안 제5조제2항)

마.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바. 위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2023. 9. 26. ~ 2023. 10. 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개 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¹⁾(시행 2023.7.4.)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²⁾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사항 검토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수정 (제명, 안 제2조, 안 제10조 ~ 제13조, 안 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제명)

· 자전거정비소 ⇒ 자전거수리센터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3.]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및 조항 신설(안 제5조)

· 정비계획 ⇒ 활성화계획

(신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통행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 상위법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안 제7조의2)

○ 기존 위탁운영 조항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음.

○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중 아래 사항은 집행부의 요청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집행부 조례개정안 수정의견 제출사항요청

원안	수정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각각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